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6억 1,000만 6천원
- 징수결정액 : 6억 1,930만 2천원
- 실제수납액 : 6억 1,901만원
- 결손처분액 :
- 미 수 납 액 : 29만 3천원
-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1.5%(전년도 99.7%)임.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 -(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계	610,006	619,302	619,010	-	-	293	101.5	99.9
일반회계	610,006	619,302	619,010	-	-	293	101.5	99.9
세외수입	17,792	27,088	26,796	-	-	293	150.6	98.9
경상적세외수입	2,185	6,503	6,210	-	-	293	284.2	95.5
이자수입	2,185	6,503	6,210	-	-	293	284.2	95.5
기타이자수입	2,185	6,503	6,210	-	-	293	284.2	95.5
임시적세외수입	15,607	20,586	20,586	-	-	-	131.9	100.0
보조금반환수입	15,607	20,554	20,554	-	-	-	131.7	100.0
시·도비보조금 등반환수입	15,607	20,141	20,141	-	-	-	129.1	100.0
자체보조금등반 환수입	0	412	412	-	-	-	-	100.0
기타수입	0	32	32	-	-	-	-	100.0
그외수입	0	32	32	-	-	-	-	100.0
보조금	589,214	589,214	589,214	-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589,214	589,214	589,214	-	-	-	100.0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 -(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국고보조금등	589,214	589,214	589,214	-	-	-	100.0	100.0
국고보조금	589,214	589,214	589,214	-	-	-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0	3,000	3,000	-	-	-	100.0	100.0
보전수입등	3,000	3,000	3,000	-	-	-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3,000	3,000	3,000	-	-	-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000	3,000	3,000	-	-	-	100.0	100.0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70억 8,897만 5천원
- 예산증감 : 9억 2,024만 4천원
- 예산현액 : 80억 921만 9천원
- 지 출 액 : 75억 9,141만 8천원
- 집행잔액 : 4억 1,780만 1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2%(전년도 10.3%)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214만 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13만 5천원, ‘낙찰차액’ 2억 3,380만 6천원, ‘지출잔액’ 1억 6,171만 3천원임.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예산		8,009,219	7,591,418	-	417,801	5.2
일반회계 예산 합계		8,009,219	7,591,418	-	417,801	4.7
사업예산 계		7,554,070	7,200,119	-	353,951	7.1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511,839	498,434	-	13,405	2.6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433,573	427,849	-	5,724	1.3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78,266	70,585	-	7,681	9.8
실효성있는 동원자원관리		12,560	12,557	-	3	0.0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12,560	12,557	-	3	0.0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2,782,574	2,752,906	-	29,668	1.1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04,480	74,826	-	29,654	28.4
	예비군 육성 지원	2,079,085	2,079,085	-	-	0.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35,200	35,186	-	14	0.0
	시민 안보의식 함양	454,390	454,390	-	-	0.0
	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109,419	109,419	-	-	0.0
사회복무요원 관리		380,710	304,608	-	76,102	20.0
	사회복무요원 관리	380,710	304,608	-	76,102	20.0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1,328,406	1,320,169	-	8,238	0.6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4,500	4,500	-	-	0.0
	민방위교육운영비	431,105	431,105	-	-	0.0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4,225	24,225	-	-	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34,325	128,602	-	5,723	4.3
	민방위교육장 운영	264,918	262,404	-	2,515	0.9
	안전교육센터 기능보강	350,000	350,000	-	-	0.0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119,333	119,333	-	-	0.0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528,221	528,221	-	0	0.0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23,780	23,780	-	-	0.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04,441	504,441	-	-	0.0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2,009,760	1,783,226	-	226,534	11.3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009,760	1,783,226	-	226,534	11.3
일반예산 계		455,149	391,299	-	63,850	14.0
	기 본 경 비	452,070	388,220	-	63,850	14.1
	재 무 활 동	3,079	3,079	-	-	0.0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무인정찰기, 쓰레기풍선 등 서울시 공중위협 실태분석 및 메가시티 대드론체계 구축연구결과의 적용방안 도입을 위한 **안보포럼**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등 운영’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총 1건, 2,000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라, 증가 인원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 확보를 위해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총 1건, 5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지출결정액 : 1억 941만 9천원
- 지출액 : 1억 941만 9천원
-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 70원
- 1차 북쓰레기풍선 피해지원으로 4,555만 2천원
- 2차 북쓰레기풍선 피해지원으로 3,432만 4천원
- 3차 북쓰레기풍선 피해지원으로 2,087만 3천원
- 4차 북쓰레기풍선 피해지원으로 867만원

총 4건, 1억 941만 9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941만 9천원을 지출하고, 70원을 불용처리(불용률 0.0%)했음.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109,419	109,419	109,419	-	-
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302-02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 보상금	45,552	45,552	45,552	-	-
		34,324	34,324	34,324	-	-
		20,873	20,873	20,873	-	-
		8,670	8,670	8,670	-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4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5개 사업에 5억 8,921만 4천원을 수령하여 5억 8,921만 4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4년도말 비상기획관 관리 공유재산
 - 건물 2,517.35㎡ 4억 5,660만원,
 - 기타 1건 3,252만 9천원,
- 총 4억 8,912만 9천원 상당의 금액

〈 2024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천 원)

구 분		2023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4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491,079	-	1,950	489,129
행정 재산	소계	491,079	-	1,950	489,129
	공용재산	491,079	-	1,950	489,129
	공공용재산	-	-	-	-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개산		-	-	-	-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4년도말 비상기획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319만 4천원
- 매각·폐기 등 0원
- 당해연도말 319만원 4천원 증가하여
- 총 수량 107개, 현재액은 4억 6,429만원임.

〈 2024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illegible]

Ⅱ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6억 1천만원) 대비 101.5% 수납된 6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8억 5천 8백만원) 대비 27.8%(2억 3천 8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징수결정액(6억 1천 9백만원) 대비 징수율은 99.9%(전년도 100%)임.

- 비상기획관 주요 임무는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및 민방위 태세 구축 등 국가 비상 대비 태세 완비를 전략 목표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주요 세입과목은 국고보조금이 95.2%(5억 8천 9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세입 결산 증감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예산대비		2023 결산액 (C)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D)	비율(D/C)
합 계	610,006	619,302	9,296	101.5%	857,654	Δ238,352	Δ27.8
세 외 수 입	17,792	27,088	9,296	152.2%	72,710	Δ45,622	Δ62.7
경상적세외수입	2,185	6,503	4,318	297.6%	5,769	734	12.7
임시적세외수입	15,607	20,586	4,979	131.9%	66,941	Δ46,355	Δ69.2
보 조 금	589,214	589,214	0	100.0%	741,944	Δ152,730	Δ20.6
지 방 교 부 세	-	-	-	-	40,000	Δ40,000	순감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3,000	3,000	0	100.0%	3,000	0	-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목별 징수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 -(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계	610,006	619,302	619,010	-	-	293	101.5	99.9
일반회계	610,006	619,302	619,010	-	-	293	101.5	99.9
세외수입	17,792	27,088	26,796	-	-	293	150.6	98.9
경상적세외수입	2,185	6,503	6,210	-	-	293	284.2	95.5
이자수입	2,185	6,503	6,210	-	-	293	284.2	95.5
기타이자수입	2,185	6,503	6,210	-	-	293	284.2	95.5
임시적세외수입	15,607	20,586	20,586	-	-	-	131.9	100.0
보조금반환수입	15,607	20,554	20,554	-	-	-	131.7	100.0
시·도비보조금 등반환수입	15,607	20,141	20,141	-	-	-	129.1	100.0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0	412	412	-	-	-	-	100.0
기타수입	0	32	32	-	-	-	-	100.0
그외수입	0	32	32	-	-	-	-	100.0
보조금	589,214	589,214	589,214	-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589,214	589,214	589,214	-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589,214	589,214	589,214	-	-	-	100.0	100.0
국고보조금	589,214	589,214	589,214	-	-	-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0	3,000	3,000	-	-	-	100.0	100.0
보전수입등	3,000	3,000	3,000	-	-	-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3,000	3,000	3,000	-	-	-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000	3,000	3,000	-	-	-	100.0	100.0

가. 세외수입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천 8백만원) 대비 52.2%(930만원) 초과 징수된 2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2.7%(4천 6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예산대비		2023 결산액 (C)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D)	비율(D/C)
합 계	610,006	619,302	9,296	101.5%	857,654	Δ238,352	Δ27.8
세 외 수 입	17,792	27,088	9,296	152.2%	72,710	Δ45,622	Δ62.7
경상적세외수입	2,185	6,503	4,318	297.6%	5,769	734	12.7
임시적세외수입	15,607	20,586	4,979	131.9%	66,941	Δ46,355	Δ69.2

1) 예산 대비 과다 세입 발생(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은 자치구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반납액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4년도 당초 본예산(1,561만원) 대비 29.1% (453만 4천원)의 초과 징수(2,014만원) 되었고,
 - ‘기타이자수입’은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으로, 본예산(218만 5천원) 대비 284.2%(402만 5천원) 초과 수납되는 등 매년 과다한 초과 세입이 반복되고 있음.

<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결산 연혁 > (단위 : 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징수율 (C/B)
2024	2,185,000	6,502,620	6,210,050	284.2	95.5
2023	3,380,000	5,768,570	5,768,570	170.7	100.0
2022	6,047,000	9,713,300	9,597,420	158.7	98.8
2021	563,000	1,897,550	1,897,550	337.0	100.0

- 반환수입 등(‘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과도한 오차의 발생은 전년도에 자치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의 과다한 집행잔액에 원인이 있는 것인바,
- 당초 지방보조금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수요 조사·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규모의 지방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3-03 위탁비반환수입	1. 위탁사업 반환수입
		216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

2)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수납)

- 비상기획관에서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에서 세입 예산액 편성 없이 세입 징수결정하여 수납(44만 4천원)되었음.

<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비고
세외수입			2024	17,792	27,088	26,796	
임시적세외수입				15,607	20,586	20,586	
보조금등반환수입				15,607	20,554	20,554	
자체보조금반환수입				0	412	412	세입예산 편성없이 징수
기타수입				0	32	32	
그외수입				0	32	32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80억 9백만원) 대비 94.8%(75억 9천 1백만원)를 집행하여, 불용률은 5.2%(4억 1천 7백만원)로 전년(10.4%) 대비 감소하였으나,

-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2.0%) 보다 높게 발생하였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예산의 전용 · 변경, 예비비사용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예산	8,009,219	7,591,418	-	417,801	5.2
사업예산 계	7,554,070	7,200,119	-	353,951	7.1
일반예산 계	455,149	391,299	-	63,850	14.0

가. 예산의 전용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산의 전용은, 무인정찰기, 쓰레기풍선 등 서울시 공중위협 실태분석 및 대드론체계 구축 연구결과의 적용방안 도입을 위하여,

- 안보포럼의 예산확보를 위해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1건, 2천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현황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198,306	-20,000		'24.11.7.	177,806	177,594	212	0.1%
통합방위협의 회 등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000		20,000		40,000	19,865	20,135	50.3%

※ 2022년도, 2023년도 : 예산전용 없음.

- 다만, 본 예산의 전용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전용을 통해 신규 행사를 추진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신규 행사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경정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예산을 전용하여 감액한 사업(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과, 전용하여 증액 하고도 전용받은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등은 비상기획관의 질서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비상기획관 예산 전용은 다음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첫째,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예외적으로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는 제도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포럼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전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신설되어야 할 것임.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기준에도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사업에 행사운영비를 만들고자 전용한 것으로 사료됨.

둘째, 신규 행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전용에 앞서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도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한 채 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전용제도를 부적절하게 오용한 사례로 사료됨.

나. 예산의 변경사용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예산의 변경사용은, 신규직원 채용(2명, 2024.4.1.)에 따른 대민활동비(특정업무경비) 부족 예산 확보 및 지급을 목적으로,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같은 사업의 ‘특정업무경비’로 1건에 5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2024 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178,306	-500		'24.11.25.	177,806	177,594	212	0.1%
	204-03 특정업무경비	39,000		500		39,500	39,477	23	0.1%

※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예산 운영 형태로써, 필요한 규모의 예산만 변경 사용하여야 하나,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사용하고도 이를 불용처리 하였는바,

- 이러한 예산의 운영은 예산의 예외적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예산의 경직성을 가중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하는 비효율적 예산의 상징적 운영 형태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기획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2024회계연도 중 예산의 전용·변경을 위한 재원이 모두 “을지 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당초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추계 없이 전례답습적 과다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구됨.

다. 20% 이상 불용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예산 결산 결과 4억 1천 8백만원(예산현액 80억 9백만원의 5.2%)을 불용처리 하였음.

- 이 중 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의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민방위 경보 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으로,
- 총 집행잔액(4억 1천 7백만원)의 54.2%(2억 2천 6백만원)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시설비(1억 4천 1백만원) 및 공공운영비(8천 6백만원)’에서 발생하였음.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통계목별)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40,000	19,865	20,135	50.3	비상계엄(25.12.3.) 발생으로, 안보 포럼 개최 취소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202-03 국외업무여비	10,000	7,502	2,498	25.0	출장 일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잔액 발생
사회복무요원 관리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0,170	294,088	76,082	20.6	입대 취소(1명), 입대 연기자(6명)로 인한 배정 지연 등
민방위경보 시설 확충 및 보수	401-01 시설비	1,249,759	1,109,113	140,646	11.3	2024년 민방위경보 사이렌 교체· 신설 사업 낙찰차액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81,900	32,054	49,846	60.9	사이렌 시설점검업무 분리에 따른 출장인원 감소 및 비상계엄 등 사유로 타 지자체 출장 미시행

- 비상기획관은 2024회계연도 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중, “민방위
경보 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은 ‘사이렌 교체 및 신설’과 관련해서 발생한
낙찰차액(1억 4천 1백만원)에 따른 것으로,
-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입대 연기 등에 따라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7천 6백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5천만원)는 소관 업무의 분리 등으로 출장 인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와 개선 없는 연례
적 행정 운영을 반증하는 것으로, ‘국내여비’(출장비)의 경우는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관례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
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 국내여비 집행 현황(통계목별) 〉

(단위:천원)

회계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2024	기본경비 (국내여비)	202-01 (국내여비)	81,900	32,054	49,846	60.9
2023			40,320	19,941	20,379	50.5
2022			40,320	13,546	26,774	66.4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

○ 비상기획관은 3개 사업에 추가경정예산(8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2천만원)과 예산의 전용(2천만원) 등 2번에 걸쳐 예산을 증액(4천만원)하고도, 1억 4백만원(예산 현액) 중 3천만원(28.4%)을 불용처리 하였음.

〈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가)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본예산	추경예산	소계	전용			
합계	1,707	806	2,514	20	2,534	2,504	30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64	20	84	20	104	75	30
예비군 육성 지원	1,643	436	2,079	0	2,079	2,079	0
안전교육센터 기능보강	0	350	350	0	350	350	0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 오히려, 두 번에 걸친 예산의 증액 조정(추경, 전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으로, 비상기획관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음.

〈비상기획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4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7,088,975	7,088,975	7,545,300	456,325	456,325	6.4	6.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64,480	64,480	84,480	20,000	20,000	31.0	31.0
예비군 육성 지원	1,642,760	1,642,760	2,079,085	436,325	436,325	26.6	26.6

※ 2024년 6월 추경

〈 2024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현황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198,306	-20,000		'24.11.7.	177,806	177,594	212	0.1%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000		20,000		40,000	19,865	20,135	50.3%

※ 2024년 11월 전용

마. ‘안전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폐지)

- 본 사업은 마곡안전체험관 건립 및 준공('24. 4월)에 따라 개관 초기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목적으로 시민 안전체험 강사료(운영비 1억 1천 9백만원)를 일회성 지원한 사업으로, 시설 건립 완료 후 폐지된 사업임.

□ 추진실적

- 안전교육센터(마곡안전체험관) 시민강사료 예산교부 '24. 5월
- 안전교육센터(마곡안전체험관) 시민안전교육 운영 '24. 5~12월
- 안전교육센터 운영지원 정산 완료 '25. 3월

〈 ‘안전교육센터 운영지원’ 예산 집행 현황(2024회계연도) 〉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시민강사료)	119,333	119,333	119,333	0	100.0

〈 ‘안전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시민(학생포함) 및 민방위대원
- 사업내용 : 안전교육센터(마곡안전체험관) 건립 진행 중 개관 초기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지원

〈 2024회계연도 ‘안전교육센터 운영지원’ 결산 실적(발체)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예산	8,009,219	7,591,418	-	417,801	5.2
사업예산 계	7,554,070	7,200,119	-	353,951	7.1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1,328,406	1,320,169	-	8,238	0.6
안전교육센터 운영 지원	119,333	119,333	-	-	0.0

- 먼저, 마곡안전체험관 운영비(안전체험 강사료) 지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다만, 본 사업을 통해 마곡안전체험관 강사 인건비(강사료)를 지원한 것은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지원(운영비 1억 1천 9백만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상기획관의 법령 준수를 통한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규정 숙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참고사항) 마곡안전체험관 일부 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3억 5천만원)도 함께 지원(“안전교육센터 기능 보강” 사업(폐지))한 바 있음.

바.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4척 5천 4백만원을 편성·지출하였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¹⁾」

1)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454,390	454,390	-	-
시민 안보의식 함양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36,110	436,110	0	-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8,280	18,280	0	-

〈 사업 개요 〉

□ 사업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 서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 및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1. ~ 12.
- 사업규모 : 연 7천여 명(청소년, 안보단체회원 등 서울시민)
- 수행기관 : 서울시 재향군인회
- 예 산 액 : 454백만원
- 사업내용 : 6.25전쟁 기념행사,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여군창설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안보교육 지원, 재향군인회 운영비

〈 사업별 추진내역 〉

항 목 별	참석인원	장소	추진일자
6.25전쟁 기념행사	900명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6.23.(금)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4,391명	전적지(서울·파주지역)	4.10.(월)~12.8.(금)
여군창설 기념행사	320명	공군호텔 / 임진각, 헤이리	본행사 9.6.(수) 간담회 10.23.(월)
나라사랑 안보포럼	330명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6사단 사령부 수색대대	1차 4.17.(월) 2차 11.8.(수)

※ 출처: 2024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결과 보고

-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의 보조사업 운영 경과를 보면, 보조금 지급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사업별 운영 취지 및 성과와 적정 사업규모 등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교부액 증감(%) - 전년 대비 -
2024	454,390	445,025	9,366	9,366	220,580 (94.3)
2023	233,810	233,810	-	-	153,810 (192.3)
2022	80,000	75,583	4,417	4,417	-

- 한편, 비상기획관이 제출한 본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면, 내실있는 안보포럼 프로그램의 운영, 전후세대 안보견학 참여 희망 학교의 증가, 안보현장 체험 후기 공모 운영, 전문강사의 학교 방문을 통한 맞춤형 안보교육 실시, 전·현직 여군 행사 지원 등 사업에서 일정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6.25전쟁 기념행사’의 참여대상 다양화와 안보강연 주제 발굴의 필요성, ‘전후세대 안보견학’은 1박2일 현장체험, 안보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안보견학지 발굴과,
- ‘나라사랑 안보포럼’은 기존 재향군인회 회원에 더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 등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이 제시되고 있으나,
- 교육효과 제고, 형식적 행사로의 변질 방지 등을 위해 실질적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사업비 잔액(939만 5천원)은 계업상황으로인한 안보교육 취소(1개 학교) 및 재향군인회 조직부장의 1 2개월 공석에 따른 운영비에서 발생하였음.

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위배(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 비상기획관 사업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종이류’에 편성된 예산액(116만원) 대비 113.2%(247만원)를 집행하는 등 매년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장비수리비(64.2%), 도서구입비(11.5%), 사무용품·소모품·우편료 등 841만원 순증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내역	집행액	집행잔액
기본경비	149,336		146,407	2,929
기본사무용종이류	1,160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2,473	△1,313
소규모수선비	325	수선비	386	△61
행정장비수리비	5,040	프린터 토너 구입비	8,278	△3,238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	25,680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인쇄 등	21,803	3,877
도서구입비	450	도서구입	502	△52
급량비	93,60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84,161	9,43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5,200	○ 교보재 및 훈련물자 등 : 3,310천원 ○ 시청민방위대원용방독면구매:6,636천원 ○ 예비군및민방위대원급량비 : 2,576천원	12,522	2,678
피복비	7,881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복	7,878	3
기타	0	사무용품, 소모품, 우편료 등	8,405	△8,405

- 기본경비의 산출기초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무질서한 사무관리비 운영 행태가 매년 지속되고 있음.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되는 행태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사안으로,

- 비록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전년 수준의 반복적 예산편성 보다는 제도개선 등의 등 실효적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편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